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06

발의연월일: 2022. 9. 30.

발 의 자:김영주·강민정·강병원

강준현 · 김경만 · 김경협

김승원 · 김정호 · 송재호

유정주 • 이수진(비) • 조승래

홍정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 반경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서울 신당역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살해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가해자 감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제기됨.

이에, 본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 킹 행위자에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가운데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를 추가하였음. 더하여, 해당 조치가 취해진 행위자가 피해자 근처 1km 이내 등 일정 한 거리에 접근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와 경찰 등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잠정조치를 피해자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빠른 판단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가 사건의 합의 종결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협박 등을 행하다 결국 살해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에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사"를 "법원에 직접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호" 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km 이내 등 일정 거리에 도달한 즉시 사법경찰관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실 및 스토킹행위자의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피해자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정보

를 수신한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경찰 또는 사법경찰 관에게 신변보호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 또 는 사법경찰은 이러한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생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현행 략) 과 같음) (2)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법원에 직접 제9조제1항 각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검사----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 토킹행위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치) ①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 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 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 11	7 - [-x

1. ~ 4. (현행과 같음)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
자장치의 부착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호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호
<u> </u>
6 제1항제5호에 따른 잠정조
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 스토
킹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km 이내 등 일정
거리에 도달한 즉시 사법경찰
관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실
및 스토킹행위자의 실시간 위
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

⑦ 제6항에 따라 피해자와 사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삭 제>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 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경찰관이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수신한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경찰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변보호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 또는 사법경찰 은 이러한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 ② (현행 과 같음)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 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제5